##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논산시의회 의장



2022년 1월 13일

논산시의회규칙 제5호

##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(이하 "대리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학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정대리) 논산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 이라 한다)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"사고" 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  - 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  - 2.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대리한다.
  - 3.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- 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